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의장

제1045호 2014. 9.15.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14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14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---- 3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10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 ----- 4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10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일부 도로명 변경 서면동의 결과 공고 ----- 17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1066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(안) 입법예고 - 18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142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09. 12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북항로363번길 58외 14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09. 1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4-09-12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 서구 원창동 437-34	북항로363번길 58	2013-12-02	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 3,6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	인천 서구 원창동 437-8	북항로363번길 50	2013-12-02	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 3,6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3	인천 서구 경서동 976-82	푸른로13번길 14	2013-07-30	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4	인천 서구 경서동 754-4	경서로45번길 5	2009-08-28	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5	인천 서구 경서동 743-14	경서로45번길 8-19	2009-08-28	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6	인천 서구 원창동 21-21	봉수대로501번길 58-20	2009-07-01	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,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7	인천 서구 원창동 21-20	봉수대로501번길 58-18	2009-07-01	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,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8	인천 서구 경서동 845-5	청라한울로41번길 25	2011-02-14	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9	인천 서구 당하동 1109-7	청마로134번길 23-1	2008-12-31	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0	인천 서구 당하동 1108-8	청마로134번길 13-2	2008-12-31	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1	인천 서구 원당동 21-4	원당대로 983-143	2008-12-31	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	
12	인천 서구 마전동 515-17	원당대로 763-22	2008-12-31	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	
13	인천 서구 당하동 1079-6	청마로7번길 24	2008-12-31	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4	인천 서구 당하동 1081-1	청마로51번안길 20	2008-12-31	청마로51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 있는 도로	
15	인천 서구 원당동 5-2	원당대로 1091	2008-12-31	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	

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143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14. 09. 12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
인천 서구 공촌동 301-1	경명대로683번길 5-6	2014-09-04	건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1060호

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4. 9. 12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서구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자원봉사 참여자가 늘어남에 따라
- 센터조직의 운영 및 인력에 대한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센터의 조직 확대 및 직원 충원 근거 마련(제3조)
-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직체계 구성 신설(제13조의2)
-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임용 근거 마련(제18조의2)
- 직원 승진에 따른 직급 및 보수에 관한 근거 마련(제19조제2항)
- 직원 근무성적 평가를 위한 근거 신설(제18조제3항)
- 자원봉사센터 기관장 명칭 변경(소장 → 센터장)



3. 의견제출

- 이 시행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14. 10. 6(월)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(참조 : 복지정책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-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

【 (우) 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/

☎ 032-560-5884 / Fax 032-560-2738 】

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

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소장, 운영위원회, 운영팀”을 “센터장, 운영위원회, 2개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운영팀”을 “총무기획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교육홍보팀 : 팀장 1명, 운영요원 2명

제2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조직체계)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1과 같다.

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소장, 서기는 자원봉사센터 팀장”을 “센터장, 서기는 총무기획팀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소장”을 각각 “센터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센터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임하며 팀장,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용한다.

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임용된 팀장,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1년에 2회(상, 하반기)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이 현저하

게 낮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.

제18조제4항 단서 중 “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별표1과”를 “별표2와”로 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승진임용) 상위 직급에 결원 발생 시 별표2에서 정한 직원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직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구청장의 승인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, 승진 시 1호봉을 감한다. 단,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 실적이 저조할 경우 공개채용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, “7급 상당”을 “6급 상당 또는 7급”으로, “9급”을 “8급 상당 또는 9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표2와”를 “별표3과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1호 중 “자원봉사센터소장”을 “자원봉사센터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표3과”를 “별표4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센터의 기구)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(이하 “조례” 라 한다) 제7조에 따른 센터의 기구는 <u>소장, 운영위원회, 운영팀</u>을 두며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소 장</u> : 1명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<u>운 영 팀</u> : 팀장 1명, 운영요원 2명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3조(센터의 기구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센터장, 운영위원회,</u> <u>2개팀</u>----- -.</p> <p>1. <u>센 터 장</u> 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총무기획팀</u> ----- -----</p> <p>4. <u>교육홍보팀</u> : 팀장 1명, <u>운영요원 2명</u></p> <p>제3조의2(조직체계)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1과 같다.</p>
<p>제4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<u>소장</u>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거나, 그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.</p>	<p>제4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센터</u> <u>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1. ~ 3. (생략)

제10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,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장, 서기는 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된다.

제15조(예산) ① 소장은 다음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신청된 예산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, 예산확정 후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소장은 확보된 구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결산) 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간사) -----

--- 센터장, 서기는 총무기획팀장-----.

제15조(예산) ① 센터장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센터장-----
-----.

③ 센터장-----

-----.

제16조(결산) 센터장-----

-----.

1. ~ 4. (생략)

제18조(직원의 임용 등) ① 센터의 직원(이하 “직원”이라 한다)은 소장, 팀장, 운영요원으로 구분한다.

② 직원은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직원채용은 모집공고에 의한 신청자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하고,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채용한다.

④ 직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, 근무 상한연령, 당연 퇴직, 직권 면직의 경우에는 「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 다만, 소장의 임기는 근무상한 연령에도 불구하고 조례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직원의 임용 등) ① -----
----- 센터장-----.

② 센터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임하며 팀장,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용한다.

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임용된 팀장,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1년에 2회(상, 하반기)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.

④ -----

----- 센터장-----
-----.

제8조제3항에 따른다.

⑤ 직원임용의 선발 자격은 별표1과 같다.

<신 설>

제19조(보수지급) ① (생략)

② 직원의 봉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의거 소장은 별정직 5급 상당, 팀장은 별정직 7급 상당, 운영요원은 별정직 9급 상당으로 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.

③ 직원의 각종 경력인정 부분은 별표2와 같다.

④·⑤ (생략)

제21조(공인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

⑤ ----- 별표2와 ---.

제18조의2(승진임용) 상위 직급에 결원 발생 시 별표2에서 정한 직원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직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구청장의 승인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, 승진 시 1호봉을 감한다. 단,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 실적이 저조할 경우 공개채용으로 한다.

제19조(보수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센터장-----
-- 6급 상당 또는 7급 상당----
----- 8급 상당 또는 9급 -----

③ -----
별표3과 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공인) ① -----
-----.

한다.

1.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
터소장 직인

2. (생 략)

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
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
별표3과 같다.

③ (생 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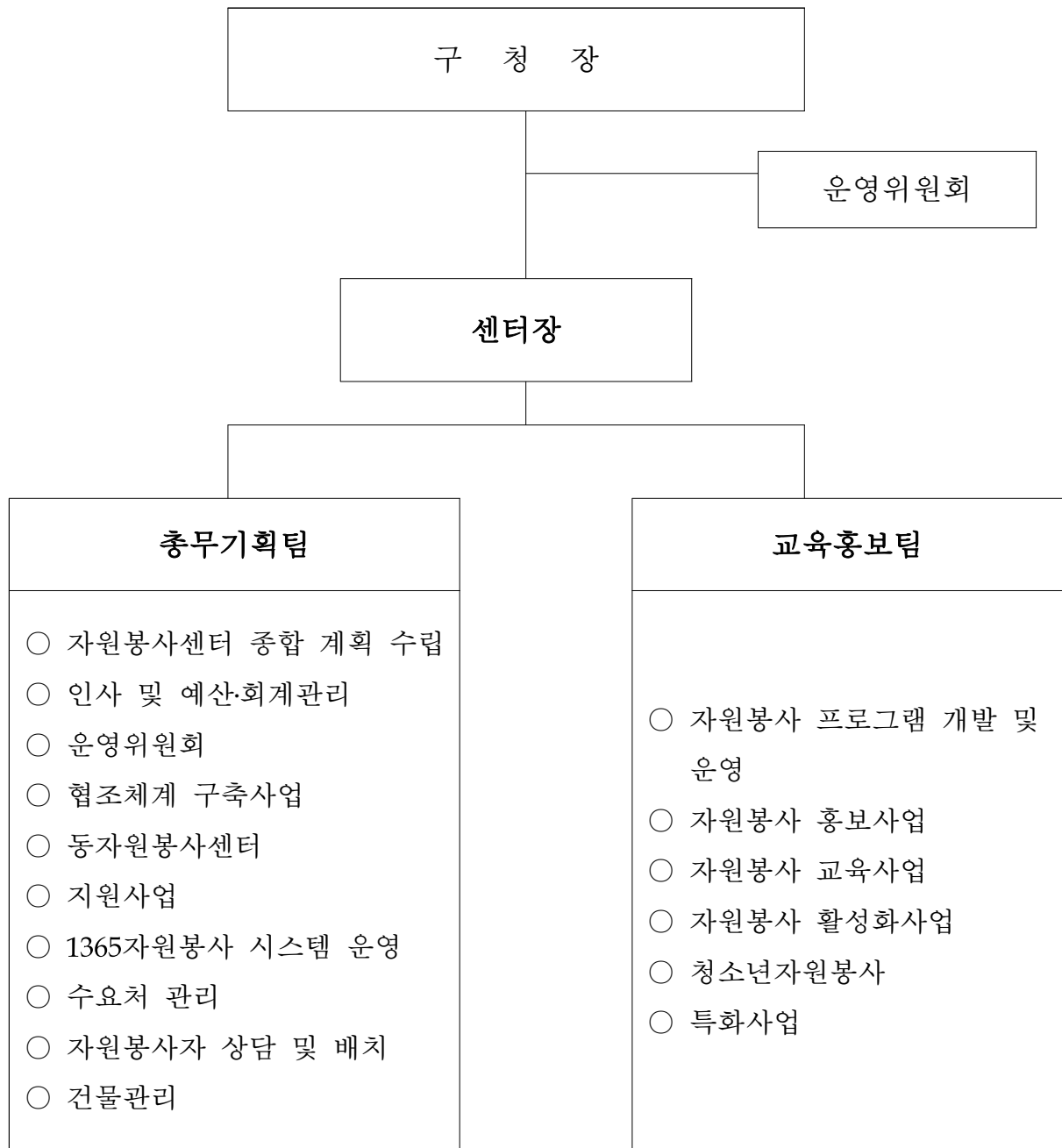
1. ----- 자원봉사센
터장

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별표4와

③ (현행과 같음)

[별표1] 센터의 조직체계 및 임무



※ 업무(사무)의 분장은 센터의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

[별표2] 직원 임용 선발 자격

구분	선발시험		자 격 기 준
	1차	2차	
센터장	서류 전형	면 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○ 자원봉사 단체·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 기관, 시설, 학교,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○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 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
팀장	"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·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○ 7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○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○ 6급 상당 팀장은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7급 상당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자 ○ 7급 상당 팀장은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8급 상당으로 7년6개월 이상 근무한 자
운영 요원	"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자로 자원봉사 기관·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○ 9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○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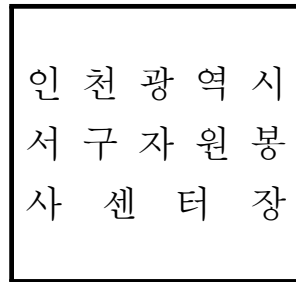
[별표3] 센터 직원의 호봉 산입표

구 분	경 력 산 입 내 용
갑 경력(10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- 군 복무 경력(의무복무기간에 한함) - 시 및 군·구에서 설치한 자원봉사센터 근무경력
을 경력(8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자원봉사 관련 단체근무 경력 -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아동복지법」,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여성발전기본법」 등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(단,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
병 경력(5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

※ 군복무 경력 및 각종 경력인정은 10호봉을 초과하지 아니하며, 기타 제반사항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준한다.

[별표4]

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장 직인



○규격 : 가로 2.1cm × 세로 2.1cm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1061호

인천광역시 서구 일부 도로명 변경 서면동의 결과 공고

청라국제도시 일부 도로명 변경 신청에 대한 주소사용자 서면동의 결과를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3제10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09. 11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공고기간 : 2014. 09. 11. ~ 09. 26.(15일간)
2. 서면동의 결과

도로명		도로명부여사유	변경사유	서면동의 결 과	도로명 변경여부
변경전	변경후				
비즈니스로	청라비즈니스로	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	도로명 변경신청	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함	변경 불가
솔빛로	청라솔빛로	인천광역시 내 같은 도로명 존재	도로명 변경신청	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함	변경 불가

※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(☎032-560-483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1066호

『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』를 폐지함에 있어 폐지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4. 9. 15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(안) 입법예고

1. 폐지이유

-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내 591-1 버스노선 신설 운행으로 무료 순환버스 운행 중단(2013. 3. 15)
-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내 지장물(공·폐가 등) 철거 준공완료 (2014. 7. 20)

2. 주요내용

- 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」 부칙 제2조(경과조치)
 - 이 조례는 개발지역내에 있는 공·폐가의 철거가 완료되어 철거 준공되었거나 순환버스의 이용자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순환버스의 운행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폐지된다.



3. 의견제출

- 이 조례 폐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14. 10. 6(월)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-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

【 (우) 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/

☎ 032-560-4121 / Fax 032-560-2710 】

4. 참고사항

-

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**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
폐지조례(안)**

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일원 개발지역 순환버스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